

상수도 지구(MID-PENINSULA WATER DISTRICT)

주거지 수도 서비스 중단 정책

효력일 2020년 2월 1일

1. 배경

본 정책은 특정 공공 서비스의 중단을 관할하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법 조항 60370 *이하*, 캘리포니아 주 공공 시설법 조항 10001 *이하*, 그리고 보건 및 안전법 조항 116900 *이하*에 따라 상수도 지구 (MPWD)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채택되었습니다. 보건 안전법 조항 116900 *이하*, SB 998에 의해 제정된 수도 차단 보호법은 도시 수도 공급업체 및 MPWD와 같은 도시 및 지역 수도 시스템에게 미납으로 인한 수도 서비스 중단과 관련하여 서면 정책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MPWD의 웹 사이트에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한국어 및 서비스 지역 주민의 최소 10%가 사용하는 기타 언어로 게시될 예정입니다. www.midpeninsulawater.org

2. 주거지 수도 요금 납부

MPWD로부터 수도 서비스를 받는 모든 주민들은 명세서나 청구서를 받은 후 30일 내에 해당 서비스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법률에 의해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MPWD는 기한 내에 전액을 납부하지 않는 가구에 대해 수도 서비스를 중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MPWD는 대상 가구가 요금을 미납해도 최소 60일까지는 수도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3. 이의 제기

만약 수도 요금이 과다 청구되었거나 사용하지 않은 수도 서비스가 청구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청구서나 명세서를 받은 후 7일 내에 MPWD (우편주소: 3 Dairy Lane in Belmont, California)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MPWD에서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검토하고 조사할 것입니다. 총 책임자는 모든 정보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릴 것이며, 적절한 경우 공정하고 공평한 방법으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고객이 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총 책임자의 결정으로부터 7일 내에 해당 결정에 대한 이의를 이사회에 서면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기록을 검토한 후 다음 정기 이사회에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이사회 결정은 최종적인 것입니다.

4. 서비스 중단 통보

MPWD는 법률에서 요구하는 대로 고객 및/또는 실제 사용자에게 체납금 및 서비스 중단 예정에 대한 통지를 제공합니다. 우편, 구내 통지, 또는 전화를 통해 통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MPWD는 고객이 최신 상태로 유지하지 않은 우편 또는 전화 연락처 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수도 서비스 중단 방지

전화 (650) 591-8941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월-금 오전 8:00 ~ 오후 4:30 에 직접 방문(3 Dairy Lane in Belmont, California)을 통해 MPWD 에 연락을 취하여 본 정책에 따른 요금 미납 수도 서비스 중단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의논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은 MPWD 에 서비스 중단 방지를 위한 대체 납부 옵션을 승인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체 납부 옵션에는 납부 유예 또는 요금 감액, 대체 납부 일정 또는 연체료 상각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요청을 할 때 고객은 자신이 정상 기간 동안 청구액 전액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MPWD 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MPWD 는 단독 재량으로 이러한 요청을 허용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이러한 요청을 승인하고 수도 서비스를 종료하지 않습니다.

- A. 고객 또는 고객의 세입자가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의 생명, 건강,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의 1 차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인증서(복지 제도법 조항 14088(b)(1)(A)에 정의)를 MPWD 에 제출하는 경우
- B. 고객이 다음 중 하나의 이유로 MPWD 의 일반적인 청구 기간 내에 수도 요금을 납부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 1. 고객의 가족 구성원이 현재 CalWORKs, CalFresh, 일반 부조, Medi-Cal 보충 소득 보장/주 보충 지불 프로그램 또는 California 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캘리포니아 여성, 유아, 아동 특수 영양 보충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 2. 고객의 1 년 가계 소득이 연방 저소득층 기준의 200% 미만인 경우
- C. 고객이 이 정책에 따라 할부 상환, 대체 지급 일정 또는 납부 지연이나 감액 납부 계약을 체결할 의지가 있는 경우

이 경우 MPWD는 적용 가능한 단독 재량에 따라 고객에게 다음 옵션 중 하나 이상을 제공합니다.

- AA. 미납 잔액의 할부 상환
- BB. 대체 납부 일정
- CC. 미납 잔액의 일부 또는 전체 감액
- DD. 일시적인 납부 지연

MPWD는 고객에게 어떤 지불 옵션을 적용할지 선택할 수 있으며, MPWD의 단독 재량으로 해당 지급 옵션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옵션을 선택하든 12개월 내에 잔액을 전액 상환하게 되지만, MPWD는 고객의 특정 상황에 따라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납부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